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전동차를 검사하고 수리하는 현장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서 절연화를 꼭 신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안전화를 신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전동차 검수로 일상(2 또는 3일에 1회)과 월상(2 또는 3개월에 1회)작업으로 전동차에 공급되는 전차선 전원 1600V를 차단하고 전차선에 접지봉을 설치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육안, 기능검사와 불량부품교환 작업을 완료한 후 전차선에 전원을 투입하고 전동차를 기동시켜서 인버터출력전원 220V를 멀티테스터로 측정하는 작업(3개소)과 여타 전기부속품 고장시 전원부와 제어부 전원 100~220V를 오실로스코프나 멀티테스터로 검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절연화를 신어야 하는지요?

절연화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압(교류 600V 이하)작업 : 저압충전전로의 점검 및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에는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 제346조, 제347조)
- 고압(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작업 : 1,600V 와 관련되는 전로 또는 지지물의 정전작업 (설치·점검·수리 또는 도장 등의 작업), 1,600V 충전전로의 취급작업(점검 및 수리) 또는 충전전로 근접의 취급작업(점검 및 수리),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에는 (이 경우 고압할선 작업 및 근접작업에 해당됨) 절연장화를 착용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8조 및 제349조).

**Question** 당사업장에서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매번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직무를 변경합니다. 기계운전과 운반직무인데 이때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정기적으로 직무를 전환해서 작업한다면 매번 작업내용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직무 전환 하므로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내용의 변경이란 근로자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설비·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 없이 기계운전작업과 운반작업을 정기적으로 반복·수행하는 경우라면 최초 작업내용변경이 있을 때에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되 매번 작업변경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작업장의 공기 체적 : 73.2㎡(실험실 면적) × 2.5m(높이) = 183㎡
2.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 10㎡/시간
3.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월간사용량 : 1,125ml/월


#### 4.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 12종

- (1) 유기화합물 : 사염화탄소, 아세톤, 이소아밀알콜, 초산부틸, 피리딘, 헥산
- (2) 산 및 알칼리류 : 수산화나트륨, 황산, 질산, 염산, 초산
- (3) 가스상물질 : 암모니아수

5. 작업 내용 : 이화학분석실험실로서 각종 사업장에서 의뢰 받은 시료에서 이화학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약품은 분석용 시약으로 해당 관리대상유해물 중 선택적이며, 비정기적으로 사용되고, 1일 분석소요시간은 4시간 이내 임.

귀 사업장에서 질의한 내용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의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작업환경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를 질의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과, 동항 제2호에 의하면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보건규칙 제11장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관련 규정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연이은 단서에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발암성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단서에 명시하고 있는 장소에는 허용소비량과 무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염화탄소(발암성물질)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비록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현장에서 채용된 건축(계약직)기사가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또한 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므로 귀 질의서상 계약직 기사의 건강진단비용 및 현장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